

제 303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1972. 10. 26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 보

이	영구보존문서는 자기로 필요로 하여 영인하였음.
Sci. S. S.	
기	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◎ 규 칙

- 제 1266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직제중개규칙 3
- 제 1267 호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직제 4
- 제 1268 호 서울특별시수원지사무소직제중개규칙 5
- 제 1269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개규칙 5

◎ 교 시

- 제 156 호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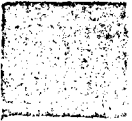
◎ 공 고

- 제 236 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제 1 지구 (1, 2, 3 공구)
환지에 정지지정 6

◎ 사 령 7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

규 칙

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식
1972년 10월 25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266 호.

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직제중
개정 규칙

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내지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5 조 내지 제 6 조를 신설한다.

제 3 조 (조직) ①사업소에 관리계, 과징계, 생산제와 공무계를 두고 관리계장과 과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생산계장은 지방화공기좌 또는 지방기계기좌로, 공무계장은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화공기좌로 보한다. ②사업소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 리 계

- 가. 사업소 전반행정의 종합조정
- 나. 인사, 복무, 급여 및 후생
- 다. 문서, 관인 및 기밀
- 라. 기획, 예산, 회계 및 비품관리
- 마. 각종 사재의 구입 조정과 출납
- 바. 차량 및 청사관리
- 사. 가스사업의 개선과 원가계산
- 아. 가스수요가 조사와 소요량 판단

- 자. 가스사업확장 계획
- 차. 가스공급조례 위반처리
- 카. 사업소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과 징 계

- 가. 가스사용량 조사확인
- 나. 가스사용료 조정징수
- 다. 세입금의 수납 및 세입통계
- 라. 가스전 관리
- 마. 가스공급조례위반 적발통보
- 바. 가스공급중지, 해제, 폐전처리
- 사. 가산금과징과 파오납금 정리
- 아. 사용료 기타수입에 대한 체납처분
- 자. 수납부 관리 및 보존
- 차. 가스미터의 매각대 징수
- 카. 가스사용자의 명의변경
- 타. 가스사용요금관계 민원처리

3. 생 산 계

- 가. 가스생산계획
- 나. 가스의 생산조업 및 공급
- 다. 가스공장시설의 유치관리와 안전관리
- 라. 가스발생시설의 연구개발

4. 공 무 계

- 가. 가스공급종합계획
- 나. 가스배관 계획의 조사, 측량, 설계 시공감독
- 다. 가스공급 시설의 안전관리
- 라. 가스제조공장의 건설
- 마. 가스연소장치(기구)의 연구개선
- 바. 가스미터 성능검사 및 수리
- 사. 가스미터의 수복교체

아. 가스배관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보수와 사고처리
 바. 가스배관망도 유지관리
 차. 가스공급조례위반 적발 통보
 카. 가스배관공사에 따른 민원처리

제 4 조 (공장장) ①생산계에 각 가스제조공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장장을 둔다. 남부공장의 공장장은 생산계장이 겸임하고 용산및 여의도공장의 공장장은 생산계 소속 공무원

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원중에서 소장이 이를 임명한다.
 ②공장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당해 공장에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공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 5 조 (공장명의명칭과위치) 도시가스공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제 6 조 (직무대행) 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관리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도시가스공장의 명칭 및 위치

명 칭	위 치
도 시 가 스 남 부 공 장	서울특별시 영등포구목동 14-1
도 시 가 스 용 산 공 장	서울특별시 용산구동부이촌동 301-16
도 시 가 스 여 의 도 공 장	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동 1-656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녹지사업조직제를 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 1972년 10월 25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267 호

서울특별시녹지사업조직제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(이하 "사업소"라한다)의 조직과 업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
제 2 조 (직무) 사업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사방사업의 시행
2. 사방시공지 보호관리

3. 녹지대및 가로수 유지관리
4.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방및 녹지에 관한 사항

제 3 조 (사업소의명칭, 위치) 사업소의 명칭, 위치와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제 2 조에 따른다.

제 4 조 (소장)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림기좌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 5 조 (공무원) 사업소에 소장이외의 두는 공무원의종류와 정원은따로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폐지규정) 1959.6.3일자 서울특별시 규칙 제158호 서울특별시 사방관리소

서울특별시 수원지사사무소직제중 개정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10월 25일

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68 호

서울특별시수원지
사무소직제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수원지사사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수원지사사무소장은 지방전기기정, 지방기계기정, 지방토목기정으로, 보조수원지사사무소장은 지방전기기사, 지방기계기사, 지방화공기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10월 25호

◎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69 호

서울특별시립보건소
직제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립보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 (위생과) ①위생과에 식품위생계와 환경위생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.

②위생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식품위생계

가. 식품위생업소 (제조업소제외)

허가 및 지도 단속

나. 시민 영양의 개선지도와 식생활의 지도

다. 식중독에 관한 사항

라. 식품위생업소 (제조업소제외)의 위생검찰

마.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환경위생계

가. 환경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허가

나. 환경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단속과 위생검찰

다. 대중집합소 극장, 수영장, 기타 주민보전에 관한 사항

라. 부정식품 단속

마.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6 호

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

하천법 제 25 조에 의거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하였으므로 하천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72. 10. 25.

서울특별시장

허가년월일	점용장소	수면종류	점용면적	점용목적	공작물의 개요	점용기간	허가를받은자의 주소·성명
72.10.25	영등포구 시흥동시흥교 상류 1.8 km 지점(안양천)	하천	1,156㎡ (350평)	공장진입로 개설을 위한 교량가설	콘크리트옹벽 길이 : 110" 폭 : 8.5" 교량공사 길이 : 136" 폭 : 8.5"	공사착공일로부터 6개월	영등포구 시흥동 514-5 기아산업주식회사대표 김철호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36 호

영등토지구획정리사업제 1지구 (1, 2, 3 공구) 환지에정지 지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영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제 1 구 일부 토지 (1, 2, 3 공구)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에 의거 환지계획의 인가를 득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별첨 도서와 같이 지정하여 동법 제 5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지구

토지·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사용 수익권을 부여합니다.

2.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2 과 성동구청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동 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며 소관 구청에서 제증명 발급에 임하고 있습니다.

3. 환지에정지 지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.

1972. 10. .

서울특별시장

사 령

◎ 1972. 10. 23.

아동병원 지방행정주사 진 주 상
총무과 파견 (제 2 부시장실
근무요원) 근무를 명함.

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고 의 복
인사 214- (72. 10. 20 자)
발령 제 718 호에 의거한 서대
문구 근무를 동일자로 취소하
고 종로구 수도사업소 근무를
명함.

서대문구 지방행정사무관 전 명 환
보 건 소
마포구 세무제 2 과장에 보함.

마 포 구 지방행정사무관 윤 각
성북구 세무제 1 과장에 보함.

성 북 구 지방행정사무관 이 용 운
서대문구보건소 민원봉사실
장에 보함.

마 포 구 지방행정사무관 이 규 신
마포구 세무제 1 과장에 보함.

동대문구 지방행정사무관 박 시 원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.2 호
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1 월에
처함.

◎ 1972. 10. 26.

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장 운
수도사업소
내무국 총무과 근무를 명함.

경기도내무 지방행정서기 이 용 일
국 지방과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

지방행정서기에 임함.
4 호봉을 급함.

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

서 울 특 별 시 장